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2년 5월

- 기관명 :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연락처 :
- 의견서 총 쪽 (표지 포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20인 이상 (20억건설공사) 사업장 적용

50인(50억건설공사)미만 사업장적용유예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6조의2</p> <p>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p> <p>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p> <p>가. 전화 상담원(39912)</p> <p>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p> <p>다. 텔레마케터(5313)</p> <p>라. 배달원(922)</p> <p>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p> <p>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p> <p>부칙</p> <p>제3조(휴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 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p>

(1) 의견 및 근거

○ 의견 - 반대

○ 근거

- 한국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명의 과로사 발생, 15,000명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휴게시설 설치에 의한 노동자의 설 권리 보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비정규 하청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창고, 계단 밑 등 열악한 휴게시설이 방치되어 있었음. 이에 건강권뿐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제기로 법 개정이 되었음.
- 입법 예고된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개소로는 6%에 불과하고, 노동자는 60%만이 적용대상이 됨. 전체 노동자의 40%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 대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므로, 법 제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완전히 무력화 하고 있음.
- 부칙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를 하고 있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8%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노동자는 40.4%에 불과함. 대상 사업장의 98%는 법이 시행되는 8월에도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임.
-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에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냉난방 전기 요금 수준임.
- 노동부의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총의 조사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율이 100%이고, 50인- 100인 사업장은 설치율이 95.8%에 달함. 2022년 8월 법 시행 이후 추가 적용 사업장이 4.2%에 불과한 적용대상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임.
- 건설업의 경우 20억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1년 적용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은 <1억이상의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휴게시설만 적용대상을 달리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고 있음.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산안법 3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었고, 통칙 조항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치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임.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산안법 128조의 2에서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20인이상등 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며,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

(2) 개정 대안

- 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플랜트와 같은 장치 산업, 기계 제작 조립 등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 사업장 면적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음.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기준 준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도 크고, 사업장 면적도 충분히 확보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전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동노동이나 장소임대 사업장의 경우 등과 같

이 제한적으로 일부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의 종류

①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①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 1억 이상 건설공사

③ 다만, 사업장 면적이 휴게실의 최소기준 미만인 사업장으로 공용휴게실 이용이 가능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 공사금액 산정 기준

(1) 입법 예고안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2) 의견 및 근거

○ 의견 - 찬성

○ 근거

- 법안이 원청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 산정은 관계 수급인의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임. 원청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만 가게 되면 하청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의무를 부여한 법령자체가 형해화 됨.

-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는 것임.

3) 공동설치 운영

(1) 입법 예고안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의견

○ 의견 - 보완을 전제로 찬성

○ 근거

- 사업장 부지가 협소한 사업장, 이동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공용휴게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어 조항 도입에 찬성함.
- 그러나, 휴게시설의 1인당 단위 면적기준이 규정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휴게실 설치 거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휴게실 설치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법정 의무 준수라는 면피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더욱이, 시행규칙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은 최소 면적기준등을 정한 1호를 적용제외로 하고 있어, 사업장의 악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공동 휴게시설 설치 운영이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정 대안

- 휴게시설 설치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공용휴게실 설치 규정을 보완하면 차별없는 노동권을 실현하고,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② 다만, 각호의 사업장은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배달, 운송, 설치 수리 등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업

나.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사업장 면적이 관리기준의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③ 2항의 공용휴게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휴게시설 단위 면적등 설치 관리 기준 - 시행규칙 제 194조의 2

1) 단위면적등에 대한 입법예고안

<p>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p> <p>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p> <p>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p> <p>※ 비고 (일부 적용제외)</p> <p>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p>
--

2) 단위 면적 등에 대한 시행규칙 예고안 의견 및 근거 - 반대

-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은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적정한 면적에 대해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좁은 휴게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더욱 낮음. 특히,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구조 자체가 없음.
- 1인당 단위 면적 기준에 제시되지 않는 현재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수 백명, 수 천명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도 최소면적인 9㎡의 휴게실 1개만 설치되어도 법 위반에서 빠져나가게 됨.
-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하며,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2㎡로 명시해야 함. 이는 기존의 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수준임. 예고안은 2014년 서울시 청소환경근로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인당 5㎡ 내외, 서울시 교육청 1,361개 학교급식조리사 휴게실 실태조사 1인당 면적 기준 평균 2.4㎡에도 못 미치고,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

인에서 정한 단위면적 기준도 다 후퇴시키는 개악임.

- 1인당 면적 기준에서는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는 사물함, 비품 등의 면적은 제외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으로 결정함.
-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략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3) 그 외 관리기준에 대한 의견 - 반대

- 전용면적, 옥외작업 등을 이유로 관리기준 일부 적용제외 규정 반대
-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었던 작업 장소 100미터 이내, 층별 설치 등이 관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함.
- 옥외 작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함. 단기간의 공사 등 일정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천막이나 그늘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옥외 작업의 경우 휴게실 외에 추가로 설치된 천막, 그늘막 등 휴게시설이라 하더라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및 휴게시설 관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와 관리기준은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함.
- 성별에 따라 휴게실을 별도 설치 되어야 함.
- 지하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 심한 장소 등에 휴게실 설치 금지를 명시
-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수유시설 등과 별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함.
- 청소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업무의 경우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면실, 세탁시설, 목욕시설 등이 휴게시설과 인접 거리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함.

4) 개정 대안

시행규칙(안)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① 사업주가 제 12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휴게시설의 위치, 개수, 관리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설치 관리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① 설치 기준

-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하고, 층고는 2.1㎡가 되어야 한다.
- 1인당 단위면적은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게실의 면적 기준에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면적과 개소를 정할 수 있다.
- 휴게실은 작업공간과 분리되어 설치한다.
- 휴게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100미터 이내 장소에 설치하고, 각 층별로 설치한다.
- 성별로 휴게실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하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나 분진발생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탈의실, 수유시설 등과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되어야 하고 스프링 쿨러, 소화기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 장애인노동자의 설 권리 보장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한다.

② 온도, 조명, 비품 등

- 휴게실의 적정온도는 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하고, 습도 50~55%를 유지하도록 명시
- 휴게시설 내 소음 허용기준은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조명은 100~200 Lux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사용 인원에 비례한 의자, 탁자, 화장지, 음용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휴게시설에 냉방기, 난방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준

- 휴게시설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휴게시설에 설치된 설비 및 비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소독, 비품관리를 하고 정기점검 실태를 부착하고, 관리실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요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휴게실에 작업도구, 물품 등 노동자의 휴식에 방해되는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휴게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 원칙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의 다양한 조건에서 휴게시설 설치의 법적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요구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노동자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휴게실을 사업주의 설치의무 이행과 노동부의 감독 편의대로만 진행된다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음.
- 휴게시설의 설치 개소, 장소, 운영, 비품, 관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함. 하청 노동자 이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함.

3. 휴게시설 설치 실질화를 위한 방안 마련

1)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폭염시 그늘막 설치 등 사용이 가능
- 휴게실 설치 및 관리 운영 비용을 산안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과 연동하여 개선

2) 영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산재예방기금으로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

- 휴게실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클린 사업의 내용으로 포괄하여 지원
-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각종 공단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단 관련 법에 공용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공단지원기구에 부여

3) 특수고용, 이동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배달,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일한 작업 조건인 검침, 도로보수, 운송, 배달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대상 적용이 안 되고 있음.
- 동일 작업 조건으로 휴게실 이용이 불가능한 이동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해서도 휴게실 설치를 지원하거나, 사업주와 협약을 맺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